

영등포구의회
제18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
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3. 5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45호로 2015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제6항 및 「서울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」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금연지도원의 정의(안 제2조제3호)
- 나. 금연지도원의 자격, 임기, 위·해촉 사항 규정(안 제9조)
- 다.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 수립(안 제10조)
- 라.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국민건강증진법

○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「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」 개정(2014.7.28.시행)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9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,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0조는 금연지도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활동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11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당 4만원으로 하고,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6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」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,

- 금연지도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년 임기와 2년 단위 연장 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,
- 또한,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1일 4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일당 4만원,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6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,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,
- 활동수당 금액 책정은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에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,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4만원으로 하였고, 야간·휴일 활동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6만원으로 정하였는 바, 다른 감시원 활동수당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법령 위반사항도 없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, 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국민건강증진법

제9조의5(금연지도원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
2.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
3.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
4.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1.28.]

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제16조의4(금연지도원의 자격 등)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2. 건강·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지역

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.

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, 금연의 필요성,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7.28.]

[제16조의2에서 이동 <2014.11.20.>]

3

근로기준법

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 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·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)와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)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